
돌봄정책과

■ 목 차 ■

I . 부서 기본현황	1
II . 2026년 목표와 추진방향	3
①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4
②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	11
③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 돌봄 강화	17
④ 내 삶의 아늑한 휴식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21
⑤ 병원부터 재가까지,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	29

I. 부서 기본현황

(작성기준일 : 2025. 12. 31.)

1 업무현황

☐ 인 력

구분	총계 [①+②]	공 무 원							정원 외	
		소계 [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②]	내 용
현원	20	15	1	1	3	5	3	2	5	· 공무원 5

☐ 주요업무

팀 명 (정원 내/외 인원)	주 요 업 무	비 고
돌봄정책팀 (7 / 0)	▶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 통합돌봄 서비스 기관 계약·운영·품질 등 관리 ▶ 통합돌봄 협의체 운영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보건의료 연계 체계 구축 및 서비스 강화 ▶ 복지부 등 중앙부처 연계 및 성과관리 ▶ 통합돌봄 예산 관리, 서비스 비용 집행 ▶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스마트돌봄팀 (4 / 0)	▶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 ▶ 24시간심콜 상담 및 출동 ▶ 스마트 돌봄서비스 사업 발굴 및 추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 시니어 경청상담 및 건강지킴이 사업 운영	
주거의료급여팀 (4 / 5)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 건강보험료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사업 ▶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 주거급여 지급(임차급여, 청년임차급여) ▶ 주거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지원 ▶ 아동주거지원사업 운영 ▶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 추진	· 공무원 5

2 기본현황

☐ 통합돌봄 대상자 현황

(단위:명)/'25. 11월 기준

서구 인구	65세 이상	75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우선관리 대상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소계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소계	지체	뇌병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지원	A	B				
275,521	53,424 (19.4%)	22,035 (8%)	7,398	260	497	1,712	3,024	621	113	531	339	301	795	469	326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

(단위:명)/'25. 11월 기준

계	일 반 군	중 점 군	특 화 사업*
2,748	2,402	301	45

* 사례관리, 개별·집단활동, 치료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 현황

(단위:명)/'25. 11월 기준

총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국민기초				타법의료급여							국민기초			타법의료급여			
	소계	일반	시설 수급	군 입대 자	소계	국가 유공 자	북한 이탈	입양 아동	5·18	의사 상자	행려 자	소계	일반	군 입대 자	소계	국가 유공 자	5·18	의사 상자
11,940	7,371	7,242	120	9	1,078	298	25	57	691	7	2	3,400	3,343	57	89	45	42	2

☐ 위원회 현황 : 3개(위원 49명)

위 원 회 명	설 치 목 적	인 원	임 기	여성 위원 위 축 비 율
지 역 사 회 통 합 돌 봄 협 의 체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 통합돌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29명 (당연직 2, 위촉직 27)	2년	44.4% 남자 : 15명 여자 : 12명
노인맞춤돌봄협의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내용 적합성 평가 등	9명 (당연직3, 위촉직 6)	2년	50% 남자 : 3명 여자 : 3명
아동주거빈곤해소 위 원 회	아동주거 지원 계획 자문 및 심의 등	11명 (당연직 1, 위촉직 10)	3년	80% 남자 : 2명* 여자 : 8명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성비 균형을 위해 위원 추가 모집중(5명 이내 위촉 예정)

Ⅱ. 2026년 목표와 추진방향

부 서 목 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키는
「24시간 안심돌봄」 서구형 통합돌봄 실현

세 부 사 업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 ① 24시 안심, 통합돌봄 전국화 선도
- ② 주민결으로 한발 더, 방문의료강화
- ③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디지털 기술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 추진

- ① AI 스마트돌봄 「하나케어-온(溫)」 추진
- ②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
- ③ 디지털 기술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돌봄 강화

- ① 어르신 건강지킴이 「케어핏 (Care+Fitness)」 운영
-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르신 일상안전 강화
- ③ 시니어 경청상담 및 통합돌봄 모니터링 운영

내 삶의 아늑한
휴식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 ① 꿈이 빛나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
- ② 안전하고 편안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 ③ 생활 속 부담을 더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 ④ 안정된 삶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지원

병원부터
재가까지,
저소득 주민의
튼튼한
의료급여 지원

- ①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 ②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 ③ 저소득 주민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 ④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

2026년 의료·요양·통합돌봄 전국화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의료와 돌봄서비스 통합적 연계·지원

□ 역점 24시 안심, 통합돌봄 전국화 선도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관내 주민
 - (광주다움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 (복지부 통합돌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65세 이상 노인 (우선관리대상자*)
 -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퇴원환자,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맞춤돌봄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판정 대기자 및 등급외자 A/B, 고령장애인
 -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소득·재산·연령·장애 무관, 돌봄 필요 정도 평가
- 사업내용 :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

기존돌봄	광주돌봄(틈새)	복지부돌봄(지속)
▶대상자 욕구에 따라 기존돌봄 서비스부터 신속 연계	▶기존돌봄 연계 어려운 대상, 시간, 종류 등 틈새돌봄 서비스 지원(7대 13종)	▶노인 중 우선관리 대상자 집중, 재가의료·요양·돌봄 지원(4대 7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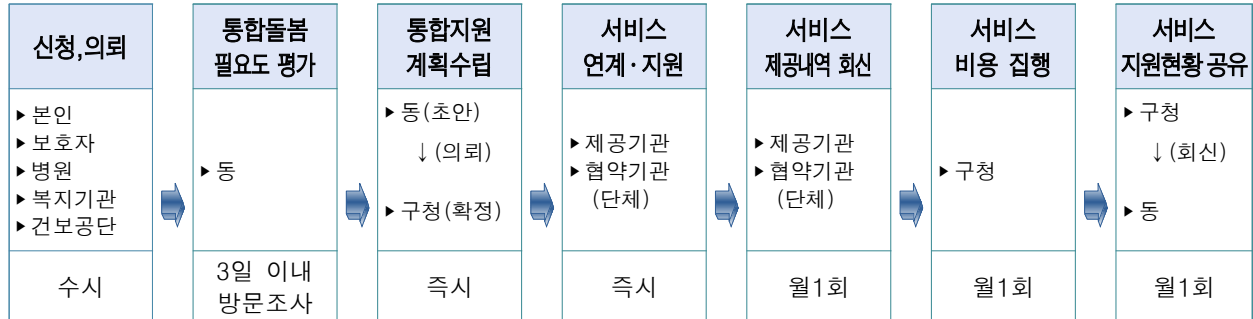
○ 지원서비스 : 24종

방문의료(7)	방문맞춤운동, 다제약물관리 ^{신규} (연계) 재택의료센터, 방문의료지원센터, 한의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구강
퇴원환자 재가복지지원(1)	방문의료+돌봄
주거지원(3)	주거환경개선, 안전생활환경, 케어안심주택
생활지원(6)	가사, 식사, 목욕, 대청소/방역·방충, 동행, 방문이미용 ^{연계} ,
스마트돌봄(2)	AI복지사, 케어벨
특화사업(5)	24시 안심콜출동, 천원택시, 돌봄교실 ^{연계} , 실버운동교실 ^{연계} , 건강지킴이 케어핏 ^{연계}

○ 서비스 비용 및 제공횟수

서비스명	서비스 단가	제공횟수
방문맞춤운동	1회 50,000원	최대 12회
다제약물관리	1차 사전상담 10,000원, 1차 방문 84,000원, 전화모니터링 12,000원 2차 사전상담 10,000원, 2차 방문 84,000원(필요시)	2회
주택환경개선	1회 2,000,000원 한	가구당 3년 1회
안전생활환경	1회 1,500,000원 한	3년 1회
케어안심주택	계약 기준 적용	6개월~최대 1년
가사지원	1시간 25,300원, 2시간 43,400원(야간·휴일은 비용할증)	월 최대 30시간
식사지원	1끼 8,000원(반찬식), 9,000원(일반식)	주 1회(1회 3식)
방문목욕	1회 88,000원(목욕차량기준)	연 17회
대청소	1회 600,000원 한	연 1회
방역·방충	1회 100,000원 한	연 2회
동행지원	1시간 25,300원(교통비 본인 부담)	월 최대 2회(왕복)
천원택시	1회당 광주 2만원, 화순전대 3만원 이내(본인부담금 1,000원)	월 최대 2~4매(편도)

○ 추진절차



[보완·변경사항]

현행 (2025)			
- 예산 : 28.5억 < 노인 의료돌봄 시범사업 > - 예산지원형 12개소, 기술지원형 217개소 - 노인,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 시범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구분	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기준중위소득 90%~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광주돌봄	면제	본인부담 100%	본인부담
복지부돌봄		본인부담 20%	100%



보완 및 변경 (2026)				
- 예산 : 18.2억(△ 10.3억) <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 - '26. 3. 27. 전국 시행 - 노인, 지체·뇌병변 심한장애인 대상 - 본인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구분	기초,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기준중위소득 90%~120% 이하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광주/ 복지부돌봄	면제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60%	본인부담
				100%

[세부계획]

- 2026년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 '26. 1.
- 서구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26. 1. ~
- 통합돌봄협의체 회의 : 연 2회
- 통합돌봄 교육 : 연 2회
- 돌봄대상자 사후 만족도 평가 : 수시
-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 연 2회
- 시-구 과장단 회의 : 격주 1회
- 광주다움 시-구 실무회의 : 월 1회
- 통합돌봄 수행기관 간담회 : 격월 1회

[소요예산] - 1,820,000천원 (국 290,000 시 1,075,000 구 455,000)

- 광주다움 통합돌봄 추진 1,240,000천원 (시 930,000 구 310,000)
-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580,000천원 (국 290,000 시 145,000 구 145,000)

지금까지 추진사항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19. 6.~22. 12.
- 전국 최초 재택의료센터 사업 시행 : '22. 7.~
-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서구 모형 확산) : '23. 1. (4개구 '23. 4.~)
- 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행(12개 지자체) : '23. 7.~
-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4개 지자체) : '25. 7.~

□ 역점 주민 결으로 한발 더, 방문의료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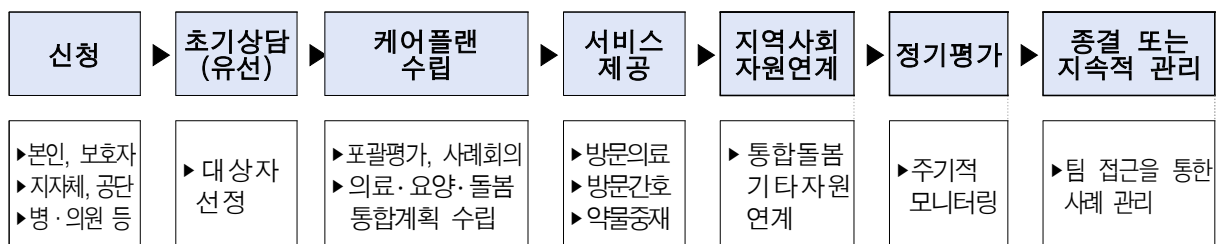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사업목적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거동 불편하고 방문의료가 필요한 노인·장애인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세부계획]

○ 재택의료센터 참여 의원 확대 및 재가생애말기 케어 모형 구축

- 대 상 : 장기요양 수급자로서 재택의료가 필요한 거동불편 노인
- 내 용
 - (재택의료센터)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타자원 연계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관리 제공
 - (재가생애말기 지원) 재택의료, 간호, 정서, 장례지원 등 재가 임종체계 마련
- 수행기관 : 첨단가족연합의원, 시니어통합의원, 태영21내과의원, 서구보건소
- 수 가 : 환자 1인당 월 140,000원^{장기요양 재택의료} + 양의 129,650원(한의 106,190원)^{건강보험 일차의료}
- 수행인력 : 총 27명(의사10, 간호사13, 사회복지사4)
- 운영절차



※ 장기요양 미수급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및 보건소로 연계

○ 퇴원환자 재가복귀 지원

- 대 상 : 최근 2주 이내 퇴원을 앞둔 돌봄이 필요한 노인 및 장애인
- 내 용 : 퇴원환자 발굴 및 의료-돌봄 연계 지원
 - (찾아가는 통합돌봄 상담) 관내 종합병원 5개소 주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퇴원 예정 환자 발굴, 상담 통해 개인별 맞춤 돌봄 안내
 - (퇴원동행서비스) 퇴원 시 동행 및 이동지원을 통해 안전하게 집으로 복귀 지원

- (퇴원환자 안심패키지) 퇴원 후 맞춤형 단기집중 서비스^{의료+가사·식사+이동+주거} 지원
- 협력병원 분기별 간담회 실시, 퇴원환자 연계 수가료(건당 5만원) 지급
- 협력병원 : 12개소(관내 5, 관외 7)

구 분	의료기관
병 원	(관내) 서광병원, 미래로21병원, 광주한국병원, 선한병원, 상무병원 (관외) 전대병원, 보훈병원, 기독병원, 해피뷰병원, 빛고을전대병원
재활병원	(관외) 광주365재활병원, 호남권역재활병원

○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연계 ‘공공 의료돌봄’ 모형 정착

- 권역별 통합건강센터(상무·농성·풍암) 건강매니저(팀장)가 통합지원회의 참여 및 돌봄지원계획 수립, 방문의료 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등 협업
 - 방문형 건강의료서비스* 지원대상자 단계적 확대
- * 방문진료(양 의/간호), 방문한의, 방문구강, 방문맞춤운동, 방문건강관리, 치매예방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구 분	방문한의진료	방문구강	방문맞춤운동	방문진료
목표인원	50명	50명	100명	100명

[소요예산] - 3,500천원 (국 1,750, 시 875, 구 875)

※ 복지부 통합돌봄 예산 포함

-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3,500천원

지금까지 추진사항

- 통합돌봄 특화프로그램 「재택의료센터」 추진 : '22. 7. 1.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1개소) : '23. 1.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2개소) : '24. 1.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3개소) : '25. 1. ~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4개소) : '26. 1. ~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50-4040) | 돌봄정책팀장 유성완(350-4951) | 주무관 이혜미(350-4952)

□ 일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 선정기준
 -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대상자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또는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 유사사업 중복 수혜자 제외(장기요양, 일상돌봄,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후 대기 중은 가능
- 지원내용 : 30일 이내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필요시 30일 추가지원 가능)

서비스 유형	서비스내용
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식사도움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지원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
이동지원	장보기, 은행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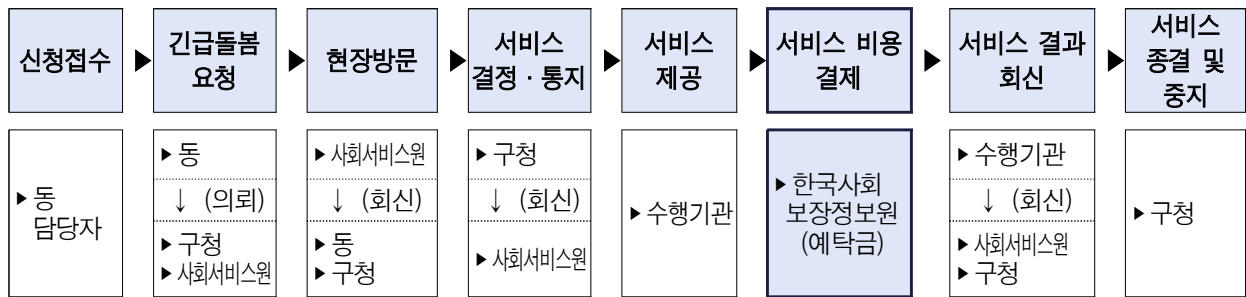
- 서비스 비용 : 시간당 19,000원 (2시간 38,000원 / 3시간 57,000원)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기준중위소득 120% ~ 140%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 160%이하	기준중위소득 160% 초과
면제	본인부담 30%	본인부담 60%	본인부담 100%

- 수행기관 : 4개소 (市지정)

기관	대표	소재지
광 주 광 역 시 안 심 돌 봄 센 터	김대삼	남구 독립로80번길 8, 복지동 2층
제 이 사 회 적 협 동 조 합	조선영	북구 신촌로 13, 2층
예 술 유 통 협 동 조 합	장경문	동구 중흥로 239, 1층
함께돌봄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이선화	서구 염화로 118, 1층

○ 추진절차



[세부계획]

- 긴급돌봄 대상자 신청 접수 : 상시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1차) : '26. 1.
- 긴급돌봄 동 담당자 교육 : 연 2회
- 긴급돌봄위원회 회의 참석 : 연 2회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2차) : '26. 9.
- 수행기관 지도 점검 : 연 1회

[소요예산] - 60,634천원 (국 42,444 시 9,095 구 9,095)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바우처} 60,634천원

지금까지 추진사항

- 복지부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25. 1.~
-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1개소) 지정^市 : '25. 1.
-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2개소) 추가 지정^市 : '25. 7.
- 긴급돌봄 지원사업 수행기관(1개소) 추가 지정^市 : '25. 12.

2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돌봄 서비스 추진

IC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 **공약** AI 스마트돌봄 하나케어-온(溫)* 추진

* AI 기반 '따뜻함(온,溫)'과 '통합(하나) 케어' 의미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목적 : AI 기술 활용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지원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170명

- AI 안부전화 : 150명(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대기자 및 취약계층)

- 케어벨 서비스 : 20명(스마트링·밀센서 등 ICT기기 지원 종료자 중 독거노인)

※ 케어벨 서비스 (취제로웹 무상지원으로 시범사업 운영)

○ 사업내용 : AI 안부전화 및 IoT 케어벨 서비스인 하나케어-온(溫)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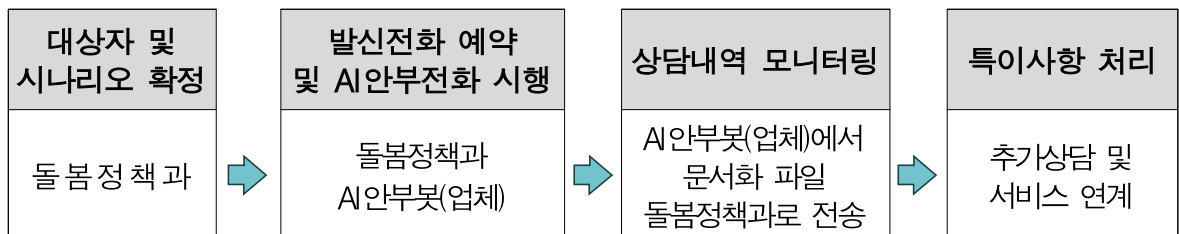
- (AI 안부전화) 인공지능 안부전화를 활용한 대상자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

· 상담시간 : 주 1회 이상 1분 이내 자동 안부전화

· 추진체계 : 대상자 및 시나리오 확정 → 발신전화 예약·자동발신 →

상담내역 모니터링 → 특이사항 처리(추가상담 및 서비스 연계)

· 추진절차



- (케어벨 서비스)택내 설치된 IoT센서 기반 24시간 관제 및 출동서비스

· 장비보급 : 활동감지·도어·온습도 센서, 긴급벨, 허브(데이터 전송기)

· 관제출동 : 긴급신호 수신* 및 이상징후** 감지시 단계별 신속대응

* 긴급신호 : 긴급벨 호출, 화재센서 작동

**이상징후 : 온도 급상승^{60℃}이상, 움직임 미감지^{8시간}이상 등 센서 관련 이상 신호

⇒ 안전확인 전화(5분 간격 3회), 보호자통보, 현장출동(KT텔레캅) 및 119신고



[세부계획]

- AI 안부확인 업체 계약 및 케어벨 업무 협약 체결 : '26. 1. ~ 2.
- AI 안부확인 및 케어벨 서비스 실시 : 상시
- AI 돌봄사업 관련 공모 신청 : 공모시

[소요예산] - 7,920천원 (시 5,940 구 1,980)

※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 포함

- AI 안부전화 서비스 7,920천원
- 케어벨 서비스 비예산

□ 역점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목적 : 돌봄수요에 신속 대응하여 24시간 촘촘한 돌봄 안전체계 구축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관내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 사업내용 : 24시안심콜 접수, 24시안심출동, ICT 기기 통합관제 등

- 24시안심콜 운영

- 내 용 : 돌봄신청, 복지상담, 간단수리 등 일상생활 불편사항 접수
- 운 영 : 주간(☎350-4000), 야간·휴일(빛고을콜택시 착신)

※ 광주돌봄콜(☎1660-2642) → 소관 구청으로 연결(주중 09~18시, 그외는 익일 콜백)

- 24시안심출동 운영

- 내 용 : 24시안심콜 불편사항 접수 → 협력업체 및 봉사자가 출동처리
- 협력업체^{착한가게} : 화성상사(양동), 평화철물(농성1동), 나라철물(금회동), 시온철물(치평동)
- 불편사항 요청 항목

간단 집수리 (소모품 교체)	형광등, 수도꼭지, 수전, 손잡이, 환풍기, 배터리 교체 등
간단 집수리 (안전 수리)	안전손잡이 설치, 가스타이머콕 설치, 레버형 손잡이 설치, 수납장 경첩 수리, 변기 수리, 가스레인지 및 환풍기 점검, 선반 설치 등
외출 동행 단순 심부름	병원 등 외출 시 동행, 물건 구입 등

- 출 동 비 : 기본 3만원 + 야간·주말·고난도 또는 2시간 이상 작업시 2만원

※ 소요되는 재료비는 본인부담

○ 추진절차

24시 돌봄 접수	접수내역 정리, 사례관리	24시 안심출동
▶ 주 간 : ☎350-4000 ▶ 야간·휴일 : 빛고을콜택시	⇒ ▶ 접수내역 유형분류 후 동행정복지센터 연계 사례관리 및 안심출동	⇒ ▶ 현장 출동하여 현장조치 ▶ 응급상황으로 판단 시 119 연결·보호자 연락

[세부계획]

- 24시안심콜 접수 및 24시안심출동 추진 : 상시
- 24시안심콜 원스톱 매뉴얼 정비 : '26. 2. ~ 3.
- AI복지사 등 ICT 기기 이용 통합관제 : 상시
 - 미응답자 등 추가 안부확인, 동 행복지센터 연계 사례 관리 등
- 24시안심콜, 24시안심출동 만족도 조사 : '26. 12.

[소요예산] - 50,770천원 (시 31,288 구 19,482)

- 돌봄정보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통합돌봄예산포함 37,158천원 (시 27,868 구 9,290)
- 24시간안심출동 재료지원 통합돌봄예산포함 1,200천원 (시 900 구 300)
- 24시안심출동지원 통합돌봄예산포함 3,360천원 (시 2,520 구 840)
- 돌봄정보센터 사무관리비 9,052천원 (구비)

[스마트돌봄정보센터]

- 정보센터 : 28㎡ (돌봄정책과 內), 관제 PC, 전화기, 대시보드 등 구비
- 근무인원 : 3명 (공무원 1, 장애인일자리 2)
- 수행업무 : 24시안심콜 접수, 상담, 24시안심출동 연계, ICT 기기 관제 등
- 추진실적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접수	64	499	917	1,811	1,301	2,446
출동	56	519	641	949	455	628

□ 일반 디지털 기술 활용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장애인복지법」 제24조
「광주 서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응급관리요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 사업목적 : ICT 기기 활용으로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응급상황에 신속 대처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독거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709명
 -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75세 이상 기초·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 조손가구 (만65세 이상 노인 & 24세 이하의 손자녀 가구)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 24시 활동지원 받는 장애인 제외
- 사업내용
 - 활동미감지, 장기외출 확인 시 응급관리요원 유선 및 방문 안전확인
 - 화재·활동량감지기, 응급호출버튼 작동 시 119 출동
 - 댁내장비 신규보급, 장비유지관리 및 서비스 대상자 교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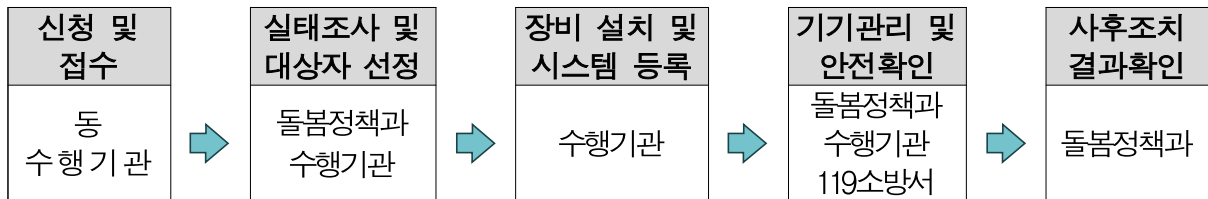
구분	활동미감지	응급상황 호출
주간 (월-금 9시~18시) 응급관리요원	출근 직후, 퇴근 직전 2회(6H) 활동미감지 대상자 안부확인 * 재난상황시 일 3회(4H) 관제	상시 * 위급한 상황은 119 바로 연계
야간·휴일 중앙모니터링센터	안전관리 강화 대상자* (대상자 20% 내에서 선정)	상시 * 위급한 상황은 119 바로 연계 그외 특이건 익일 응급관리요원 공유

* 안전관리 강화 대상자(고령자, 중증질환자, 활동미감지 잦은 분 등) 300여명

○ 진행과정

- (게이트웨이 → 소방서) 응급상황 바로 신고
 -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센서를 통해 응급상황 감지시 게이트웨이에서 119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 (게이트웨이 → 운영시스템^{서구노인복지관pc}) 장시간 미활동 감지시 대상자 상태 정보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 전송
- ⇒ 응급안전요원 유선 안전 확인 및 현장방문하여 상황조치

○ 추진절차



[세부계획]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현행화 : 상시
- 2026년도 덕내장비 488대 교체보급^{'20년보급1차장비} : '26. 6. ~ 9.
- 서비스 대상자 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응급대응 : 상시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 : '26. 5. / 12.

[소요예산] - 357,050천원 (국 174,525 시 174,525 구 8,000)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49,050천원 (국 174,525 시 174,525)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추가지원 8,000천원 (구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위탁 운영]

- 수탁기관 :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응급관리요원 4명)
 - 수탁기간 : 2025년 ~ 2027년(3년)
 - 수탁내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보급·운영, 일과시간 활동(6H) 감지 모니터링
- ※ 야간/휴일 관제 : 중앙모니터링 센터에서 1차 대응 후 상황 공유

3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 돌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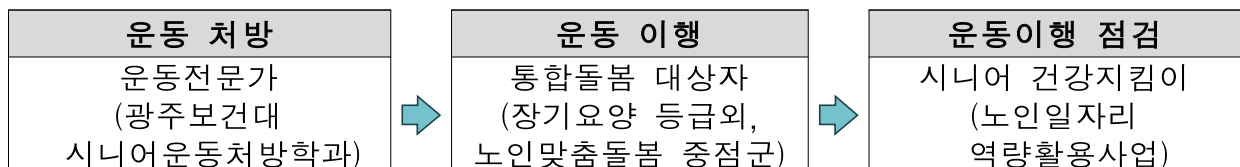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 등에 대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생활안정 등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중심의 사회안전망 체계 강화

□ **신규** **어르신 건강지킴이 「케어핏^{Care+Fitness}」 운영**

* 케어와 피트니스가 결합된 케어핏(Care+Fitness)은 돌봄에 건강관리·체력증진 결합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100명(65세 이상 어르신)
- 추진방식 : 노인일자리 및 RISE 사업^{보건대학교} 연계 운영
- 사업내용 : 운동전문가의 대상자 맞춤형 운동 처방 및 운동이행 점검
 - (운동처방) 운동전문가(학과생 또는 졸업생) 20명이 1인당 5명씩 매칭, 대상자 신체능력감안 3개월 단위 맞춤형운동처방(체력측정 → 운동처방 → 운동지도)
 - (운동이행점검) 시니어 건강지킴이가 주 1회 가정방문하여 운동이행 점검
- 추진절차



[세부계획]

- 추진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 '26. 1.
- 스트레칭, 근력강화, 균형훈련, 보행운동 등 운동 처방 : 분기별
- 주 3회 가정 방문 및 1가정 1시간 운동 이행 점검 : '26. 2. ~ 11.
- 건강·운동 교육, 응급 안전 교육, 간담회 : 매월

[기대효과]

- 노인일자리 및 RISE 사업 연계 거동불편 어르신의 맞춤형운동을 통해 체력증진, 낙상예방, 건강수명 연장 강화로 건강 악화 방지

[소요예산] - 비예산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50-4040)	스마트돌봄팀장 안은미(350-4886)	주무관 이예경(350-4878)
----------------------	-----------------------	-------------------

□ 일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어르신 일상안전 강화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사업목적 : 취약노인 대상 맞춤형 건강유지 등 서비스 제공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 유지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돌봄필요 취약노인* 3,000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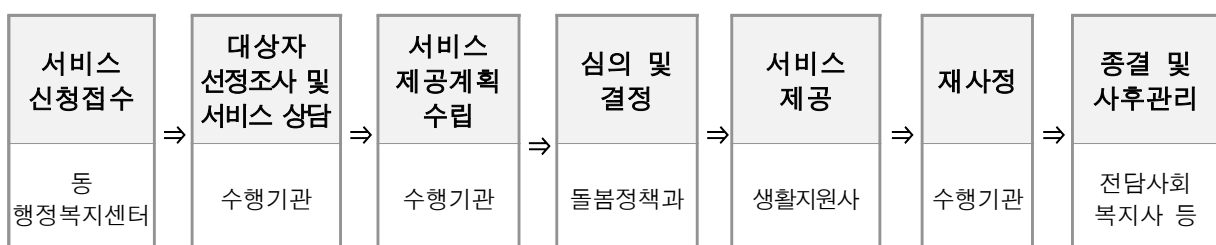
대상자 군	사업대상	서비스 내용
퇴원후돌봄군	급성기병원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 퇴원 후 일정기간 집중돌봄 필요자	월 44시간 이하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중점돌봄군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자	월 2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예방적 돌봄 필요자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 서비스(필요시)

* 유사중복사업(장기요양등급자, 가사간병서비스이용자,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 등) 대상자 제외

○ 사업내용

- [직접]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정보제공, 생활안전점검, 말벗(정서지원)
- [직접] 사회참여지원 : 여가활동, 문화활동, 자조모임 등
- [직접] 생활교육지원 : 영양·보건·건강교육, 우울예방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
- [직접] 일상생활지원 : 이동활동지원, 가사지원 등
- [특화→직접] 특화지원 : 우울·고독사 위험 취약노인 사례관리, 개별/집단활동, 치료지원
- [신규·직접]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일상회복 패키지(영양+가사+동행)

○ 추진절차



○ 수행기관 : 4개소(서구노인·시영·쌍촌·금호종합사회복지관)

구분	총계	A권역(6개동)	B권역(5개동)	C권역(4개동)	D권역(3개동)
수행기관	4개소	서구노인 종합복지관	시영종합 사회복지관	쌍촌종합 사회복지관	금호종합 사회복지관
관할지역	18개동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동, 광천동	치평동, 유덕동, 상무1동, 동천동, 서창동	화정2·3·4동 상무2동	금호1·2동, 풍암동
중간관리자	4명	1	1	1	1
사회복지사	16명	3	3	6	4
생활지원사	224명	50	50	67	57
배정인원	3,452명	770	770	1,072 (퇴원환자 60명 포함)	840
예산지원	5,482,102천원	1,192,412천원	1,192,412천원	1,739,575천원	1,357,703천원

[보완·변경사항]

현행 (2025)	보완 및 변경 (2026)
- 직접서비스(4종) + 특화서비스 -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대상자 관리	- 직접서비스 6종으로 확대 - 일반돌봄군, 중점돌봄군, 퇴원후돌봄군으로 세분화 - 퇴원환자 서비스 신규 시행

[세부계획]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6. 1.
-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 상시
- 수행기관 보조금 교부, 심의회 개최 : 분기별
- 수행기관 현장 지도점검 : 반기별

[소요예산] - 5,802,216천원 (국 3,837,470 시 1,793,072 구 17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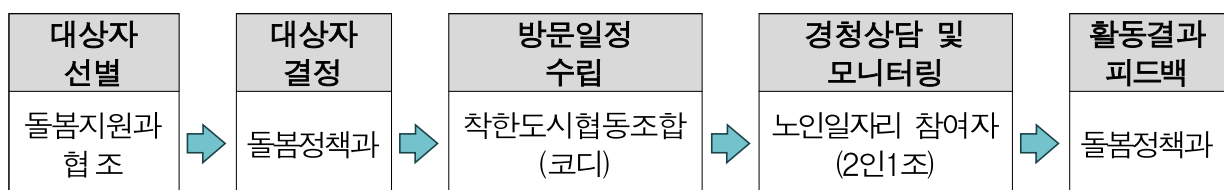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인건비, 사업비) 5,482,102천원(국 3,837,470 시 1,644,632)
-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167,516천원(구비)
- 노인맞춤돌봄 종사자 특별수당 148,440천원(시비)
-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158천원(구비)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50-4040)	스마트돌봄팀장 안은미(350-4886)	주무관 김현숙(350-4884)
----------------------	-----------------------	-------------------

□ 일반 시니어 경청상담 및 통합돌봄 모니터링 운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3조,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목적 : 고립과 은둔 어르신 대상 경청상담으로 정서적 지지 강화 및 돌봄서비스 이용 품질 모니터링 운영 강화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어르신 및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 1,200명
- 추진방식 : 노인일자리 50명 연계 운영
- 사업내용 : 경청상담, 돌봄서비스 품질관리 모니터링
 - 시니어 경청상담관 활동(40명)
 - 코디(4명) : 방문일정 조정 및 방문팀 활동 관리
 - 방문팀(36명) : 가정방문(2인 1조)하여 정서적 지원 및 필요 욕구 파악
 - 주 3회(월수금), 1일 5시간, 월 12일 활동
 - 통합돌봄 모니터링단 활동(10명)
 - 2인 1조로 대상자별 가정 방문 · 품질 모니터링 실시
 - 개선의견 수렴, 이용자 안부확인 및 복지정보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 월 60시간 활동
- 추진절차



[세부계획]

- 방문대상자 선정(돌봄지원과 협조) : '26. 1.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 : '26. 1.
- 돌봄 서비스 모니터링 및 시니어 경청상담관 활동 : 상시
- 노인일자리 참여자 간담회 추진 : 월1회
- 경청상담 만족도 조사 및 품질모니터링단 성과평가 : 상시

[소요예산] - 비예산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50-4040)	스마트돌봄팀장	안은미(350-4886)	주무관	이예경(350-4878)
--------	---------------	---------	---------------	-----	---------------

4

내 삶의 아늑한 휴식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주거 취약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을 지원

□ 일반 꿈이 빛나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광주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 사업목적 : 주거빈곤 아동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
 - * 주거기본법에 정의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주택에 살거나,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것
- 지원기준
 - 주거환경기준
 -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75%	1,923,179원	3,149,469원	4,019,277원	4,871,054원	5,667,539원	6,416,964원

○ 사업내용 : 월임차료 지원, 이사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아동사용가구 지원

구분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이사비 지원사업	생활안정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산(구비)	2,400천원	5,000천원	17,000천원	20,000천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이내 (주거급여 차감 후)	100만원 이내	100만원 이내	200만원 이내
지원가구	2가구	5가구	17가구	10가구
지원내용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아동 사용가구 등 1회 지원 (책상, 침대, 서랍장 등)	도배·장판, 정리수납 등 1회 지원
가구당 지원내역	- 이사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미이사가구 : 주거환경개선 + 생활안정지원			

※ 지원사업별 예산규모와 지원금액은 각 가구별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세부계획]

- 2026년 사업 시행계획 수립 : 2026. 1.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회의 : 2026. 2.
- 사업 신청·접수, 현장조사 및 지원 : 2026. 3. ~ 12.
- 안내문 배포 및 동 자생단체 회의를 통한 홍보 : 수시

[소요예산] - 45,700천원 (구 45,700)

-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운영 등 1,300천원
- 아동주거지원사업 44,400천원

□ 일반 안전하고 편안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케어안심주택 공급·운영 업무협약(서구청-LH, 서구청-도시공사)
- 사업대상 : 65세 이상 병원 퇴원 어르신 및 통합돌봄대상자
- 지원내용 : 안전한 주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합돌봄 제공

[세부계획]

○ 농성동 중간의 집 ‘나은하우스’ 운영

- 위 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77번길 20(농성동)
 - 건물조성 : 신축(LH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리모델링 사업)
 - 건물 수선 및 유지보수는 LH에서 관리
 - 기본빌트인 제공(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인덕션)
 - 규 모 : 4층 건물(연면적 483.579㎡ 건축면적 185.74㎡)
 - 1층 주차장(4면) 및 커뮤니티시설, 2~3층 단독(10세대), 4층 가족(2세대)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세대로서 건강상태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
(가구원 중 1명만 부합하면 신청 가능)
 - 거주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질병으로 복귀가 어렵거나 거주지가 없는 경우 1회 연장, 최대 1년)
 - 운영방법 : 민간위탁(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 (위탁기간) '23. 1. ~ '26. 12.
- ※ 입주자 선정 권한 및 운영권 LH에서 서구청으로 위임
- 운영내용
 - 입주어르신 맞춤형 영양음식 등 돌봄서비스 연계, 커뮤니티 공간 내 건강·여가 프로그램 운영
 - 상주직원을 통한 응급상황 대응과 건강관리

○ 영구임대형 케어안심주택 운영

- 규 모 : 100세대(쌍촌주공 90세대, 금호빛여울채 10세대)
- 대 상 : 통합돌봄 대상자 중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선정기준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및 통합돌봄 선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 중 사례회의를 통해서 선정
- 운영방법 : 개인 맞춤형 집수리 후 케어안심주택으로 지정하여 운영, 공실 발생시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한 주거약자에게 우선 공급

○ 돌봄교실 운영

- 대 상 : 케어안심주택 입주자 및 인근 어르신
- 장 소 : 나은하우스, 쌍촌종합사회복지관
- 내 용 : 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 소요예산 : 비예산 (RISE사업과 연계)

[소요예산] - 56,800천원 (시 42,600 구 14,200)

※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 포함

- 케어안심주택운영(나은하우스) 55,000천원 (시 41,250 구 13,750)
 - 인건비 : 2,702,370원 × 1명 × 12월 36,117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커뮤니티실 운영 물품 구입) 18,883천원
- 영구임대형 케어안심주택 1,800천원 (시 1,350 구 450)
 - 공가관리금 : 150,000원 × 12월

지금까지 추진사항

- 농성동 중간의집 업무협약(서구-LH) : '20. 7. 22.
- 농성동 중간의집 준공 : '21. 5. 28.
- 농성동 중간의집 '나은하우스' 개소 : '21. 9.
- 농성동 중간의집 '나은하우스' 구 직영 운영 : '21. 9. ~ '22. 12.
- 영구임대형(쌍촌주공@) 케어안심주택 집수리(90호) : '19. 9. ~ '20. 12.
- 영구임대형(금호빛여울채@) 케어안심주택 집수리(10호) : '20. 11. ~ '21. 1.
-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의회동의안 승인 : '22. 12. 9.
-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농성빛여울채합사회복지관) : '23. 1. ~ '24. 12.
- 농성동 케어안심주택 민간위탁 재계약(농성빛여울채합사회복지관) : '25. 1. ~ '26. 12.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60-4040)	돌봄정책팀장 유성완(360-4951)	주 무 관 이 지 혜 (3 6 0 - 4 8 3 9)
	주거의료급여팀장 정은지(360-4042)	

□ 일반 생활 속 부담을 더는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업목적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복지 제도
 - 주거급여는 임차급여(현금) 및 수선유지급여(현물)로 나뉘고, 임차인에게는 임차급여, 주택소유자에게는 주택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사업내용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20일) 및 추가(말일) 지급
 - 가구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기준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임차급여	247,000	275,000	327,000	381,000	394,000	463,000

- 청년주거급여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업,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선정기준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임차급여 (지역별 상이)	212,000~ 369,000	238,000~ 414,000	283,000~ 492,000	329,000~ 571,000	340,000~ 591,000	402,000~ 699,000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를 구분하여 개·보수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선정된 대상 가구에 집수리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범위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지붕, 욕실 및 주방개량 등
지원상한액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100%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90% 지원
 ③ 중위소득 40% 초과 ~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 : 수선비용의 80% 지원

[세부계획]

- 기초주거급여 지급(매월 20일 정기지급 및 말일 추가지급) : '26. 1. ~ 12.
- 2026년 수선유지급여 위·수탁 협약 및 대상자 확정 : '26. 3.
- 2026년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공사 시행 : '26. 4. ~ 11.

[소요예산] - 23,950,000천원 (국 21,555,000 시 1,676,500 구 718,500)

- 임차급여(청년주거급여포함) 23,150,000천원(국 20,835,000 시 1,620,500 구 694,500)
- 수선유지급여 800,000천원(국 720,000 시 56,000 구 2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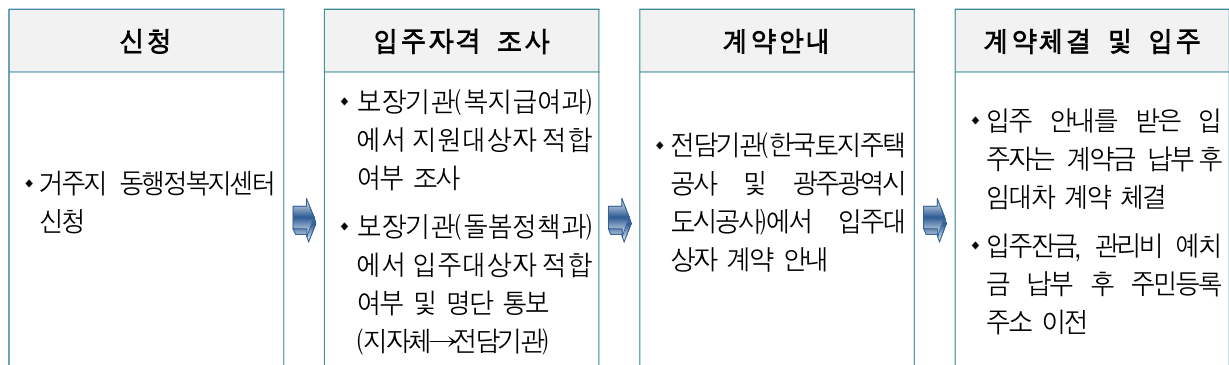
□ 일반 **안정된 삶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지원**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대상 : 수급자,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 중 입주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주택
 - 정기 모집 공고 또는 기타 사유(긴급, 주거상향지원)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하여 관리 주체(LH, 도시공사)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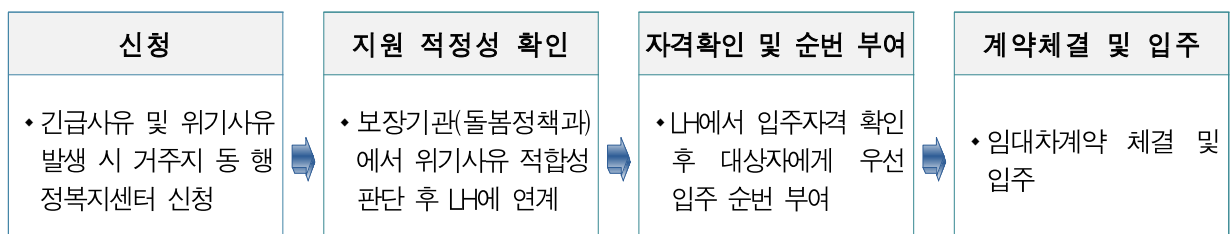
구분 \ 유형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임대기간	50년	20년	30년
주택규모	40㎡ 이하	85㎡ 이하 (5인이상 초과 가능)	85㎡ 이하 (5인이상 초과 가능)
주택형태	아파트	다가구주택	민간전세 및 보증부 월세 주택
임대료 기준	시세30%	시세30%	최대 9천만원 지원
모집기간	모집공고시	모집공고 및 기타사유	모집공고 및 기타사유
임대사업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추진절차



○ 긴급주거지원

- 긴급대상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위기가구에 대해 주거지원
 - ※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희망 유형을 선택하여 우선 순위로 입주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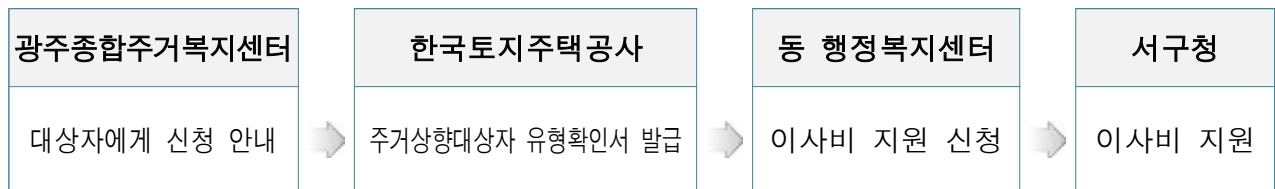


○ 주거상향지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고시원, 여인숙, 쪽방, PC방 등 비주택 3개월 이상 거주자에 대해 지원
- 지원내용
 - 입주청소 : 30만원이내 현물
 - 개보수지원 : 50만원 이내 현물
 - 정착지원 : 30만원이내 생필품
 - 이사비지원 : 40만원 이내*
 - 사후지원 : 임대료 관리비 등 가구당 월 최대 20만원 이내 3개월 납부지원
- 신청접수 :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062-383-0162)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전입일 기준 3개월 내)
-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원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추진절차



[세부계획]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고시
- 긴급주거지원 신청 : 상시
- 주거상향지원 신청 : 상시
- 주거상향지원 이사비 지원 : 상시

[소요예산] - 14,000천원 (국 7,000, 시 7,000)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 14,000천원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60-4040)	주거의료급여팀장 정은지(360-4042)	주무관 김바다(360-7404)
		주무관 곽이랑(360-703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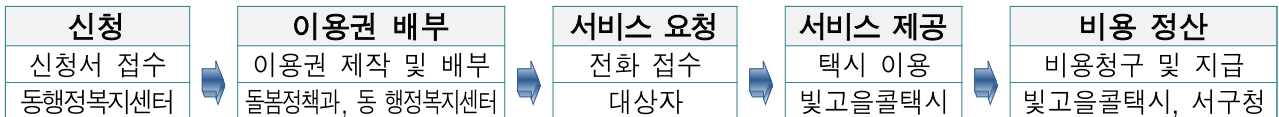
병원부터 재가까지,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의 적기 지원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로 재정 절감 및 건강 자립 향상에 기여

□ 역점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광주 서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목적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이동지원과 교통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중증질환자 및 거동불편 어르신
 - 의료급여 1종 산정특례자, 노인장기요양 1~4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
- 사업내용 : 병원 진료시 택시요금 지원
 - 택시 이용권 월 2매~4매/편도, 자부담 1천원 有
 - 택시 운행(미터)요금(최대 광주 2만원, 화순 전대병원 3만원 이내)
- 추진절차



[보완·변경사항]

현 행 (2025)	보완 및 변경 (2026)
- 의료급여 산정특례대상자 - 택시 이용권 3개월마다 배부 (1인당 월 2매/편도 지급)	- 의료급여 산정특례자, <u>노인 장기요양 1~4 등급, 퇴원환자, 치매검사 대상자</u> - 택시 이용권 3개월~반기별 배부 (1인당 월 2매~4매/편도 지급)

[세부계획]

- 중증질환자 대상 이용안내문 우편 발송 및 홍보 : 매월
- 천원택시 신청 접수 및 이용권 교부 : 상시
- 천원택시 이용요금 지급 : 매월
- 이용자 민원사항 점검을 통한 사업 운영 개선 : 상시

[소요예산] - 300,024천원 (구 300,024^{고향사랑기금})

- 건강약자 이동지원 300,024천원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60-4040) | 주거의료급여팀장 정은지(360-4042) | 주무관 임은교(360-7632)

□ 일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 사업목적 :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재정 효율화에 기여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단위:명)/'25. 11월 기준

총 계	1종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국민기초				타법 의료급여							기타	국민기초			타법 의료급여				
	소계	일반	시설수급	군입대자	소계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입양아동	5·18	의사상자	행려자	소계	일반	군입대자	소계	국가유공자	5·18	의사상자		
11,940	7,371	7,242	120	9	1,078	298	25	57	691	7	2	3,400	3,343	57	89	45	42	2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및 시설수급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2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 사업내용
 - 의료급여사례관리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배치(5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규·변동사항 관리 및 사례관리 추진
 - 신규 책정 : 복지조사팀의 신규 수급자 명단 확인 후, 의료급여 책정 및 종별 확인
 - 의료급여 종별 변경, 보장 중지 : 복지관리팀의 변동 명단 확인 후, 의료급여 종별 (1종↔2종) 변경 및 상실 처리
 - 진료비 과다이용자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을 통한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구 분	내 용	비 고
상시 관리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 의료급여 수급자(약 11,940명)	- 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약 2,388명 관리 - 급여일수 연장 및 선택병원 지정
사례 관리	신규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 최초 취득자 및 재취득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동일상병에 대해 여러의료기관 방문, 약물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이용이 확인되는 대상자 (연간 총 급여일수 700일 이상)
	장기입원자	(장기입원자)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환자, (입원관리대상자) 1일 이상 입·퇴원한 입원자, 숙식목적으로 입원한 자 등
	연중관리 대상자	다빈도 외래이용자 또는 장기입원자 등 중에서 단기간의 사례관리 수행보다는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상자

[세부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변동사항 관리 : 상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맞춤형 주기적 관리 : 상시
 - 신규군,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연중관리대상자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제도 안내 : 매월
- 신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개별교육 실시 : 상시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보험료 정산 : 매월
- 근무실적 및 사례관리 추진현황 점검 : 상시

[소요예산] - 332,047천원 (국 159,045 시 39,761 구 133,241)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국·시·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98,806천원 (국 159,045 시 39,761)
 -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 연금부담금 등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33,241천원 (구비)
 - 의료급여관리사의 수당, 명절휴가비 등 추가

공무직근로자보수	- (기본급) 2,300,000원×103.5%×5명×12월=142,830천원 - (시간외수당) 18,140원×5명×20시간×12월=21,768천원	164,598천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4,147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334,350원×5명×12월=20,061천원	34,208천원
공무직근로자보수	- 기본급(추가) 및 각종 수당	114,031천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 4대보험 및 퇴직급여충당금	19,210천원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60-4040)	주거의료급여팀장 정은지(360-4042)	주무관 김바다(360-7404)
		주무관 임은교(360-7632)

□ 일반 저소득주민의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 사업목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 완화 및 건강 수준 향상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 주민

○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완화를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명	내 용	시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 해당 장애 관련 보조기기 구입 시 기준금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상시
요양비 지원	-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요양비(소모품 구입, 대여비 등)을 기준금액 내 지원 - 당뇨소모성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양압기, 산소치료, 기침유발기, 인공호흡기, 복막투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상시
임신·출산 입양아동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가능	상시
	-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의료이용시 납부한 본인부담금 사후 환급 (서구 입양아동 45명)	분기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전년도 건강생활유지비(월 6,000원) 사용 잔액 지급 - 지원 후 잔액이 남은 1종 수급자 전체 지원 (서구 지원 대상 약 5,000명) 잔액 2,000원 미만, 사망자 등 제외	4월, 10월
본인부담 보상금·상한제·환급금 지원	- 기준금액 이상 급여비용 부담 시 일부 혹은 전액 환급 ▪ 보상금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 ▪ 상한제 -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 선 적용 후 초과시 지급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 환급금 :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본인부담금보다 많은 경우 공제 후 지급	반기

- 의료급여 사후관리의 철저한 조사 및 징수로 재정 누수 방지

- 부당이득금 결정 및 통지 : 상시
- 부당이득금 징수 : 상시
- (현지조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 (방법변경) 의료급여기관이 휴·폐업 되었거나, 6개월 이상 지급할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 현금 환수 대상 건으로 변경하여 환수
- (상해요인)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또는 고의사고 및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사고로 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환수
- (부정수급) 국민기초 부정수급자, 의료급여증 타인대여 등

- 의료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사업대상 : 광주 서구 거주민 중 건강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인면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

[세부계획]

-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및 본인부담 완화 지원 : 상시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정 통지 : 상시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환수 : 상시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 매월

[소요예산] - 859,168천원 (국 670,085 시 182,614 구 6,469)

- 의료급여운영비 27,500천원 (국 22,000 시 5,500^{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의료급여사업비 810,106천원 (국 648,085 시 162,021^{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건강보험료지원 21,562천원 (시 15,093 구 6,469)

돌봄정책과장 박용금(360-4040)	주거의료급여팀장 정은지(360-4042)	주무관 김바다(360-7404)
		주무관 임은교(360-7632)

□ 일반 **병상이 아닌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의료급여 사업 추진**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의료급여법」
- 사업목적 :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퇴원 후, 재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 정착 지원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관리인원 25명 목표(의료급여관리사 1인당 5명 유지)
- 지원기준 : 동일상병으로 31일 이상 입원했다가 퇴원한 대상자 중 1년동안 재입원하지 않는다는 동의하에 1년간 관리 및 재평가하여 최대 1년 더 연장 가능

※ 중도종결 기준 : 퇴원 후 90일 이내 30일 이상 재입원 시, 혹은 1년 동안 입원일수 총합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내용

- 필수급여 : 재가생활에 필요한 돌봄, 식사, 의료, 이동지원
 - 돌봄 -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지원(시간당 21,000원)
 - 식사 - 식사유형(밀반찬)별 영양균형을 고려하여 식사 지원(1식 8,000원)
 - 의료 - 건강관리를 위한 집중교육·상담 및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이동 - 외래진료를 위해 병원 방문 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택시이용요금)
- 선택급여 : 주거개선, 냉·난방, 안전관리, 복지용구, 필수 가전·가구 및 생활용품
 - 1인당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
- 부가급여 : 정신심리상담, 문화·여가, 법률상담 등 제공 및 연계

○ 협약기관

- 돌봄지원기관 : 광주광역시 안심돌봄센터
- 식사지원기관 : 행복을나누는도시락, 서구지역자활센터 찬찬찬
- 협력의료기관 : 첨단가족의원
- 주거환경개선 : (주)빛고을건설

○ 추진절차

대상자 선정	필요도 평가	케어플랜 수립	서비스연계 및 제공	모니터링	종결
의료급여종합정보지원시스템 활용, 의료기관 협조	입원중인 대상자 방문하여 재가 생활 필요도 조사	필요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자 케어플랜 수립	공공·민간자원 연계, 서비스 협약기관 중심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건강 수준 및 생활실태 전반 주기적 확인하고 적정 조치	대상자 스스로 재가생활 가능한 경우, 타사업으로 이관된 경우 등 관리 종결

[세부계획]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전수조사 실시 : 상반기
- 신규 등록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수요도 조사 : 상시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실시 : 상시
-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 상시

[소요예산] - 85,700천원 (국 68,560, 시 17,140^{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대상자 돌봄, 식사, 의료, 이동지원 등 85,700천원